

의 안 번 호	1650	【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】 심 사 보 고 서
--------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0. 7. 8.(수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7. 8.(수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7. 17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환경국장 노선숙)

가. 제안이유

-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고자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 대상시설 현황 및 위탁기간

시설명	소재지	규모		정원	종사자	위탁기간
		부지	건물			
울산 어린이집	화진4길 49	1,490㎡	608㎡	74명	17명	2020.7.20.~ 2022.12.31.
동원로알뜰크2차 어린이집	중가로 10 동원로알뜰크 2차아파트 관리동		207.6㎡	47명	10명	2020.9.1. ~ 2025.8.31.

※ 위탁기간 5년이나 울산어린이집은 계약기간중 중도 해지로 새로 선정된 수탁자의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

○ 위탁사무의 범위

-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업무 전반
-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- 수탁자 선정방법

- 울산어린이집: 공개모집에 따른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
- 동원로알듀크2차어린이집: 공동주택내 10년 무상임대로 재위탁에 준하여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

다. 근거법규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경희)

- 본 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내용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
어린이집 시설운영에 대한 현장경험이 많은 위탁체에게 재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큰 거 법 규

「영유아보육법」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」

제6조(위탁운영) ① 공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4조의2 별표 8의2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선정한다.

③ 제2항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.

1. 보육을 전담하는 등록 사회복지법인
2.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등록 비영리법인이나 단체
3. 규칙 제12조제1항의 별표4에 따른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
4. 법 제21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

제8조(위탁기간) ①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그 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에 따라 새로 선정된 수탁자의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위탁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그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